

(3) 결산상 세입·세출 처리상황

(단위:원)

구분	예산현액 ㉑	결산						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							
		세입㉒		세출㉓		결산상 잉여금 ㉔=(㉒-㉓)	㉕/㉖	다음연도 이월액			보조금 실제반납금㉗		현년도 채무상환 ㉘	순세계 잉여금 ㉙=㉔-㉗-㉘-㉚	
		㉒	㉒/㉓	㉓	㉓/㉔			계 ㉗=㉑+㉒+㉓	명시이월 ㉑	사고이월 ㉒	계속비이월 ㉓	보조금반납금			교부차액
합계	823,601,030,017	799,429,199,555	97 %	662,126,594,746	80 %	137,302,604,809	17 %	127,712,971,080	66,503,395,301	30,880,035,175	30,329,540,604	6,626,959,178	513,394,476		2,449,280,075
일반회계	786,397,612,317	762,078,917,938	97 %	629,131,929,814	80 %	132,946,988,124	17 %	124,727,274,730	65,393,265,301	29,072,386,095	30,261,623,334	6,585,378,279	523,611,515		1,110,723,600
특별회계	37,203,417,700	37,350,281,617	100 %	32,996,714,932	89 %	4,353,566,685	12 %	2,983,646,350	1,110,130,000	1,807,649,080	65,867,270	41,580,899	△ 10,217,039		1,338,556,475
공기업특별회계	13,023,096,810	12,795,968,604	98 %	9,536,912,896	73 %	3,259,055,708	25 %	2,687,925,710	1,110,130,000	1,577,795,710					571,129,998
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	13,023,096,810	12,795,968,604	98 %	9,536,912,896	73 %	3,259,055,708	25 %	2,687,925,710	1,110,130,000	1,577,795,710					571,129,998
기타특별회계	24,180,320,890	24,554,313,013	102 %	23,459,802,036	97 %	1,094,510,977	5 %	295,720,640		229,853,370	65,867,270	41,580,899	△ 10,217,039		767,426,477
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	1,491,999,000	1,505,797,339	101 %	1,441,000,000	97 %	64,797,339	4 %								64,797,339
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	1,553,178,000	1,555,473,824	100 %	1,471,519,000	95 %	83,954,824	5 %								83,954,824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850,248,000	847,170,925	100 %	829,333,646	98 %	17,837,279	2 %					10,402,784	△ 10,402,784		17,837,279
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	833,414,000	862,008,175	103 %	611,013,270	73 %	250,994,905	30 %	39,014,000		39,014,000					211,980,905
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	4,189,574,890	4,162,331,100	99 %	4,109,003,380	98 %	53,327,720	1 %	65,867,270			65,867,270				△ 12,539,550
수질개선 특별회계	8,661,286,000	8,672,558,650	100 %	8,400,054,060	97 %	272,504,590	3 %	190,839,370		190,839,370		31,178,115	185,745		50,301,360
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	6,600,621,000	6,948,973,000	105 %	6,597,878,680	100 %	351,094,320	5 %								351,094,320

※ 1. 현년도 채무상환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(명시이월, 사고이월, 계속비이월),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
 2. 다음연도 이월액(명시이월,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)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, 자금없는 이월액은 ()로 별도 표시